

독일의 전자무역 시스템 여건 및 전자무역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권오**

요 약

독일의 무역제도는 독일 대외경제법과 대외경제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EU의 지침에 영향을 받고 있다. 독일의 전자무역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여건은 아직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것은 독일의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이 EU 역내 회원국들의 전자무역시스템 구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독일의 전자무역 관련 법제는 EU와 연계되어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독일과의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독일 무역시장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 독일과 직접 전자무역을 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본다.

1. 서론

독일은 유럽경제통화동맹(EMU) 및 EU 통합 추진 주도국으로서 유럽에서의 경제적 위치가 매우 높다. 그래서 독일은 자유무역주의 기초 아래 EU의 통상규정과 지침 내에서 EU 역내의 차별적 조세법규 및 관행철폐 등 공동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대외무역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독일은 전체 교역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EU 역내교역 위주의 교역에서 탈피하여 수출대상지역을 아시아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신아시아 태평양 정책(The Federal Government's Concept on Asia)을 수립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과학 기술협정에 기초한 과학협력관계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사

업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세계 제2위의 수출대국이다. 최근 기업들이 새로운 무역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일을 비롯한 EU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여건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 및 EU와의 무역규모가 적고, 시장 정보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 대한 무역정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 영어권이 아니라는 점과 지역적으로 경제적 협력관계를 이룰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역환경은 꾸준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전자무역을 일반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독일과의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무역제도와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여건 분석과 함께

* 본 연구는 2003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상학부 무역학 전공 교수

전자무역의 법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전자무역 관련 법제를 고찰하여 우리나라가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독일과의 교역을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역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II. 한국과 독일의 교역관계

2.1. 한국과 독일과의 교역수준

2002년을 기준으로 독일은 한국의 7대 교역상 대국인 동시에 EU 국가중 제1위의 교역 상대국이다.¹⁾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1998년에는 40억불, 1999년에는 41.8억불, 2000년에는 50.1억불, 2001년에는 43.2억불, 2002년에는 46.8억불이었다. 한국의 대독일 수입은 1998년에는 33.4억불, 1999년에는 38.2억불, 2000년에는 46.2억불, 2001년에는 44.7억불, 2002년에는 55.6억불이었다.

<표 1> 연도별 교역 추이

단위 : 억불,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8
교역(증감율)	73.54(- 0.5)	80.10(8.9)	97.79(10.1)	87.95(- 4.4)	101.50(15.4)	77.00
수출(증감율)	40.09(-15.7)	41.85(4.4)	51.54(23.2)	43.22(-16.1)	46.00(6.4)	33.70
수입(증감율)	33.45(-42.6)	38.25(14.4)	46.25(20.9)	44.73(- 0.5)	55.50(24.1)	43.30
수지	6.63	3.60	5.29	-1.52	-9.50	-9.60

자료: 외교통상부, 독일개황, 2002.6.; <http://www.business-in-germany.de>; <http://www.kotra.or.kr/main/info/daily>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독일 총수입 5,220억불 중 대한민국 수입은 46.8억불로서 한국은 독일의 제25위 수입 대상국이었고 독일의 총수출 6,483억불 중 대한민국 수출은 55.6억불로서 독일의 총수출액 중 0.8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1) 외교통상부, 「독일개황」, 2002. 6, p. 168 참조.

제22위 수출 대상국이었다²⁾.

이에 따라 한국의 대독일 교역은 1998년에는 6.6억불 출초를 보였고, 1999년에는 교역규모가 80억불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98억불로 크게 늘어났으며, 2001년에는 88억불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101.5억불로 증가하였다. 2003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독 수출은 약 33.7억불, 수입은 43.3억불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2.2. 한국의 대독일 주요 수출입 품목

우리나라의 대독일 수출품목은 반도체, 선박,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섬유류 등 6대 품목이 전체의 68%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03년 8월 현재 대독일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반도체(56.9%), 자동차(110.1%), 무선통신기기(11.3%), 영상기기(42.8%), 고무제품(46.2%), 자동차부품(70.3%),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30.2%) 등이 있다. 대독일 수출 부진품목으로는 선박(-26.0%) 등이다.³⁾

우리나라의 대독일 수입품목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영상기기, 타이어 및 튜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주요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제6편 EU, 1997, pp. 24-2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주요시장 진출전략」, EU편, 2002, p. 259.

3) 외교통상부, 「독일개황」, 2002. 6, p. 169, <http://www.business-in-germany.de>, <http://www.kotra.or.kr/main/info/daily>

자동차 부품, 조선, 자동차, 컴퓨터 등이고 대독일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 화학제품, 원동기, 계측기 등이다.⁴⁾

2.3. 한국과 독일의 투자 관계

독일은 한국에 1997년 이후 BASF, Degussa, Commerzbank 등이 기계, 화학, 금융, 제약 부문에 진출하였다. 독일이 2001년에 한국에 투자한 규모는 투자액이 4.6억불이고 투자건수는 60건으로 외국이 한국에 투자한 총투자액 49.25억불과 총투자건수 794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독일은 세계 제5위의 대한민국 투자국이고 EU 중에서는 제2위의 대한민국 투자국이다. 2002년을 기준으로 외국이 한국에 투자한 규모는 총투자액이 52.0억불이고 총투자건수는 총 857건이다. 특히 독일은 2002년에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상용차 부문 및 승용차 판매법인 설립, BASF의 군산 비타민 공장, Allianz의 제일생명 투자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다. 독일기업의 대한민국 투자는 2003년 들어 주춤세를 보여 상반기 기준으로 투자액은 4.4억불이고 투자건수는 27건이다. 2003년 하반기부터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현대차 투자 및 상용차 합작투자, Hella-Behr 등 자동차 부품사, Thyssen Krupp 엘리베이터의 신규투자 증가로 대한민국 투자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⁵⁾

한국의 대독일 투자는 2001년도 기준으로 투자액은 1.04억불이고 투자건수는 130 여건으로서 외국에 대한 총투자액이 9.08억불임을 감안할 때, 독일은 EU 중 제3위의 투자대상국인데 주요 투자기업은 삼성전관, 삼성코닝, 현대정공, LG 등이다. 그리고 2002년의 한국의 대독일 투

자는 11.26억불로 집계되고 있다.⁶⁾

2.4. 한국과 독일의 경제협력기관

한국과 독일의 경제협력기관으로는 한·독 경제공동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베를린에서 23차 회의를 2002년 5월에 개최하였는데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통상현안, 양국간 경제협력, 과학기술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WTO, ASEM, EU 등에서 다자간협력에 관한 사항들도 논의하였다. 한·독 산업협력위원회는 서울에서 2차 회의를 2000년 5월에 개최하였다⁷⁾.

2.5. 한국과 독일의 교역에서의 유의점

독일의 무역업자들은 원칙을 준수하며 문서로 모든 거래를 이행하는 경향이 강하다⁸⁾. 무역대금결제방법으로는 현찰거래를 선호하고 있지만 수입은 L/C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신용이 있는 경우 D/A, D/P로도 행해진다⁹⁾. 독일은 산업별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주요 박람회에서 수입대상품목 및 연간 구매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더욱이 독일의 대규모 업체들은 중소기업 유통업체와 M&A를 추진하는 등 경제의 지방분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때문에 도매 및 소매업자의 조합협회가 발달하여 있다. 그리고 독일은 상품교역에서 대부분의 상품을 규격화하고 코드화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내 안전

6)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Foreign Investment in Germany의 자료

7) <http://www.europe.co.kr/GERMANY/GERMANY.htm>
<http://www.klnet.co.kr/cgi-bin/notice.cgi?fid>

8) <http://www.budongsan.com/over/germany5.htm>

9) <http://www.kotra.or.kr/ktc/muc/country/CountryDetail.php3>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주요시장 진출전략」, EU편, 2002, p. 260; <http://www.kotra.or.kr/main/info/daily>

5) <http://www.business-in-germany.de>

규격 제품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¹⁰⁾.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규격표준제도를 운영하면서 CE마크, GS마크, VED마크 사용하도록 하고 TUEV 회사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¹¹⁾ DIN(Deutscher Industrie Normenausschuss)은 산업표준 규격이다.

규격표준제도는 EU기준을 적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전자기기의 적합기준(EMU)에 적용한다. 특히 독일은 EU기준을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인데 전자기기 적합기준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가 쇄도하는 등, 제품의 시장출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CE마크는 전자기기가 EU기준에 적합인가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자체 시험을 하고 CE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마크는 모든 EU 국가내에서 통용하고 있다. EU가 제안한 22개 품목 중 저전압전기안전, 장난감, 단순압력용기, 건설프로젝트, 전자기용량, 가스설비, 개인보호장비, 기계류, 이식의료장비, 반자동저울, 원격통신 터미널장비 형식 승인 등 11개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정한 자체기준을 적용한다. EU에서 판매되는 미국제품의 약 75%가 CE마크를 획득하고 있다. GS(Gepriefte Sicherheit) 마크 및 VED(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 마크는 수입업자들이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성능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GS마크는 일반기계류에 부착하는 것이고 VED마크는 전자제품 등에 부착한다. TUEV(Technischer Ueberwachungsverein e.V.)는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기 위해 주정부가 설립한 사설회사이다. 각각의 TUEV는 제품이 EU기준에 적합한가를 시험하기 위한 권한

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III. 독일의 무역제도 운영과 대외경제법

3.1. 독일의 대외경제법

독일 무역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독일 대외경제법(AWG; AuBenwirtschafts-gesetz)과 독일대외경제법 시행령(AWV; AuBenwirtschaftsverordnung)이다. 그리고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AWG의 제10조 1항의 부속서로 매년 발간되는 수입목록리스트(Einfuhrliste)는 실행지침이 되고 있다¹²⁾. 연방정부는 경제, 전기통신, 형법, 저작권 분야의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격서비스에 의한 입법권도 보유하고 있다. 주정부는 신문잡지의 출판과 방송에 관한 입법권 및 미디어서비스에 관하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

3.2. 독일의 수출관리

독일수출관리의 기본방침은 자유화이지만 쿼터 및 덤핑제도 등은 EU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수출규제는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비제한 품목은 일반면허(open general licence), 제한품목은 특별허가나 특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방수출청(BAFA)에서는 일부 전략품목, 특히 무기·군수품과 그 생산설비·핵기술 시설·고농축 재료, 특정 공작기계 및 특정 화학시설, 이중재¹³⁾ 등을 관리하고 있다.¹⁴⁾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 「에코라벨 가이드」, 1999, pp. 9-16.

11) <http://www.bmu.de>; <http://www.din.de>

12) <http://www.kotra.or.kr/main/info/daily/eeco-contl.php3?mc>

13) Dual use-Gueter: 민수용 또는 군수용에 동시 사용가능

한 품목

- 14)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5조(대외경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제한), 제8조(개념규정) 참조
<http://www.kotra.or.kr/main/info/daily/eco-contl.php3?mc>

3.3. 독일의 수입관리

3.3.1. 독일 수입관리의 기본방침¹⁵⁾

독일은 수입관리를 위해 수입승인품목, 수입제한품목, 수입제한승인품목, 수입규제품목, 수입감시품목 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 산하인 연방경제청(BAW; Bundesamt fuer Wirtschaft) 및 연방식품/농림부산하의 연방농산/식품청(BAW; Bundesanstalt fue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3.3.2. 수입규제 대상품목¹⁶⁾

수입승인을 요구하는 품목은 수입리스트의 제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이다.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품목은 수입리스트의 제4컬럼에 “L”이라는 코드가 있는 품목인데 EU의 법령에 의하여 수입허가가 필요하지만 EU에서 별도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한 수량제한은 없다. 원산지 증명(Ursprungszeugnis)을 요구하는 품목은 수입리스트의 제5컬럼에 “U”이라는 코드가 있는 품목이다. 원산지 진술서(Ursprungserklaerung)를 요구하는 품목은 수입리스트의 제5컬럼에 “UE”이라는 코드가 있는 품목이다.

수입제한품목은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Gemeinsame Marktorganisation oder Handelsregelung)로 제한하는 농산물 중에서 “MO”라고 표시한 품목이다. 수입제한품목은 EU의 이사회 또는 집행위의 법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 규제를 받는 것은 3항목으로 국제조약, 협정 즉 GATT 또는 EU의 Roma조약 등에 의한 품목이다.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은 11개 품목으로 은행권, 정부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물질, 방사성 물질 등이다.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은 4개 품목으로 폐기물, 연료첨가용 물질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 DDT 등이다. 건강보호 견지에서 18개 품목 등이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야생동물 13개 품목, 식물 5개 품목, 공업 소유권의 보호 3개 품목, 농산물 시장 질서유지 대상물품 18개 품목 등이 존재한다.

수입감시품목은 EU회원국 전체 또는 EU집행위원회의 승인하에 독일 단독으로 정하는 품목인데 수입리스트의 제3컬럼에 “UeD”이라는 코드가 있는 품목이다. 수입감시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이전에 수입업자의 성명 등 기타 내용을 기재한 감시서류를 연방경제청(Eschborn 소재)나 연방농산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점검신고품목은 수입리스트에 “EKM”이라는 코드가 있는 품목인데 연방경제청 등을 경유할 필요가 없으나 수입통관을 할 때에 수입점검신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3.4. 독일의 관세제도

3.4.1. 독일관세제도의 방향

독일 세관은 EU의 관세 Codex(Zollkodex. 93. 10.11 EU관보 L253호) 및 독일의 관세행정법(Zollevwaltungsgesetz)에 근거하여 업무를 이행하면서 통관업무는 독일 관세율표(Deutscher Gebrauchs Zolltarif)에 의거 수행하다가 1999년 1월 「독일관세율표(Deutschen Gebrauchs-Zolltarifs)」

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비즈니스 정보 독일」, 2001, pp. 60-62 참조.

16) 대외경제법 제26조(보고 및 절차 규정), 제46조(운송 우편·여행의 감시)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22조(대외경제법 제11조상의 제한), 제23조(개념규정), 제27조(수입통관의 신청), 제27조의 a(수입검사신고), 제28조(수입통관처리절차), 제28조의 a(수입신고서), 제30조(수입승인), 제31조(수입통관), 제32조(간이절차) 참조 <http://www.kotra.or.kr/main/info/daily/eco-conitl.php3?mc>

의 발행을 폐지하면서 무서류(paperless) 수출통관을 통하여 원료비·인쇄비 및 지급결제시간을 절약하고 있다.¹⁷⁾

독일세관은 EU 공동수입규정에 따라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EU 및 EFTA회원국에 대해서는 무세이며 기타 국가는 EU 공통관세를 부과한다. 단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부과한다. 그렇지만 EU 공동차원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독일의 관세율은 양허세율, 특허세율, 일반관세율 체계이다. 양허세율은 WTO가맹국과 최혜국대우협정 체결국에 적용하는 세율이고, 특허세율은 LOME협정국, GSP 수혜국에 적용하며 일반관세율은 상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에 적용한다.

3.4.2. 독일의 수출통관제도

1) 수출허가

수출허가는 일정한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을 하면 받게 된다. 단 구매국이 국가리스트 'D'에 속하는 경우에는 구매국의 수입증명서(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또는 소비국의 수입증명서 또는 구매국도 소비국도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상품의 최종소재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¹⁸⁾ 수출허가서는 법에 의한 특별한 절차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출자의 반출(발송)세관에 수출증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포괄허가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따른다.¹⁹⁾

2)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발송지세관과 출국지세관으로 2단

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는 발송지세관(ausfuhrzollstelle) 절차이다. 발송지세관은 EU 역내 수출자 소재지역 또는 수출품 포장지역이나 선적지역을 관할하는 국내세관으로서 여행자 휴대품, 개인간 물건 송부 및 비상업적 목적의 반출이거나, 상업적인 경우에 1,600DM까지는 수출신고가 없어도 된다.²⁰⁾ 수출업자가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이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수출면허증을 교부하게 된다. 수출신고를 할 때는 수출업자가 수출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출신고서를 제출받아 신고형식 등 수출요건 및 적법성 구비여부, 수출금지·제한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수출계약서·선적서류, 허가품목의 경우 해당 허가서류 등을 징구하여 검사할 수 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발송지세관은 수출신고서 사본에 신고필증을 날인하여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²¹⁾

2단계는 출국지(반출)세관(ausgangs Zollstelle) 절차이다. 출국지(반출)세관은 EU지역에서 수출품이 최종 선적되는 항구나 지역의 세관이다.²²⁾ 즉 물품반출전심사인데 수출품 반출에 앞서 마지막 심사를 거치는 곳이다. 단 수출금지·제한 해당 품목이 없거나, 상품가치가 6,000DM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송지세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출국지(반출)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²³⁾

수출업자가 출국(반출)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하고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반출면

17) <http://www.kotra.or.kr/main/info/daily/eco-contl.php3?mc>

18)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17조(수출승인) 2항 참조.

19)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9조(제출과 신고) 참조.

20)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5조의 a, 제10조(관할세관) 3항, 제16조(간소화절차) 참조.

21) <http://www.mofat.go.kr/ko/trade/eco-convents-view.mof?page>

22)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10조(관할세관) 1항 참조.

23)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10조(관할세관) 참조; <http://www.mofat.go.kr/ko/trade/eco-convents-view.mof?page>

허증을 교부한다. 출국(반출)신고를 할 때는 수출업자가 발송지세관에서 확인을 받은 「수출신고서」 사본과 수출품을 출국지(반출)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신고를 접한 출국지(반출)세관에서 신고내용의 진실성·지급결제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목측 또는 임의추출 형식으로 수출신고서의 내용과 상품의 품목·수량을 비교 검사하고 필요서류를 요구하거나 심사필증 날인을 거부하게 된다. 수출심사가 완료되면 출국지(반출)세관은 수출신고서 사본에 심사필증 직인을 날인하여 수출자에게 교부한다. 수출업자는 수출면허증을 수령한 후에 반출을 하여 선적을 하면 된다.²⁴⁾

3.5. 독일의 수입통관제도

3.5.1. 수입통관서류

1) 수입허가 불필요 수입통관²⁵⁾

수입허가 불필요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업자는 세관에 수입통관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그 물품의 관례상 또는 언어관례상의 표시 및 대외 무역통계용 물품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업자 대신에 대리업자나 물품의 운송에 협력하는 자 등이 수입통관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허가 불필요 수입통관을 할 때에는 세관이 수입에 필요한 기초자료 내지 수입통관신청서를 받아 수입의 허용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는 관세소견서에 표기한다. EC역내의 교역에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전에 연방관청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기간과 수량 등을 관청에서 기재하여 환송한다. 예를 들면 수입통관을 신청할 때 포괄(일괄)관세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포괄관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입법상 인정하는 약식신고에 따른 약식통관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약식통관신고, 기재에 따른 통관절차의 경우에는 기재신고서 등의 제출과 함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면제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상품을 지정한 장소에 반입한 후 지체없이 수입통관을 신청한다. 수입통관신청서는 관세부와 대상물품 보관을 위한 통관처리신청과 함께, 일괄관세절차에 따라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괄관세신고서와 함께 또는 보관기간 중에는 보세창고에 제출할 수 있다. 수입통관신청서는 경제상 필요한 관세부와 대상물품의 발송을 위한 통관처리신고서와 함께 보세창고 또는 관세납입 물품보관창고에 보관중인 동안에 제출할 수 있다.

수입검사신고서(einfuhrkontrollmeldung)는 수입점검신고품목으로서 수입리스트에 “EKM”이라는 코드가 있는 품목 및 규제정에 정해진 사항이면 제출하여야 한다.²⁶⁾ 단 원산지가 EC역내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입검사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의 기간에 관하여는 연방경제관청의 관보에 공고하게 된다.²⁷⁾

수입허가 불필요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통관을 할 때의 서류로는 구매국 또는 송부국과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계산서 또는 기초자료가 있으면 되고 수입리스트의 제5컬럼에 “U”이라는 코드가 있는 품목은 원산지증명서(ursprungszeugnis), 수입리스트의 제5컬럼에 “UE”이라는

24)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12조(발송-수출신고서) 참조.

25)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3장(상품수입) 제2절(법 제26조에 의한 절차 및 보고규정) 제1관(수입허가 불필요 수입) 참조.

26)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27조(수입통관의 신청) 제2항, 제27조의 a(수입검사신고) 제1항 참조.

27)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27조 a(수입검사신고서) 참조.

코드가 있는 품목은 원산지 진술서(ursprung-serklaerung)가 필요하지만 상품의 가격이 2000DM 이하인 경우, 원산지가 EU회원국이거나 EU의 자유거래에 의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²⁸⁾ 규정에 따라서는 수입검사신고서, 수입면허증(einfuhrlizenz)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수입업자는 돌려 받은 수입신고서와 계산서를 수입통관을 할 때 세관에 제출하게 된다.²⁹⁾ 수입신고서 대신에 수입리스트의 제4컬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서로 갈음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송부국의 권위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업자 또는 송화인이 계산서에 기재하거나 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의 영수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수입허가 필요 수입통관³⁰⁾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입통관절차에서는 수입업자가 법에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수입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행정청이 이를 승인한다. 승인이 필요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할 때 수입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품목록 또는 수입허가서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서류심사 내지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거쳐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관세를 확정하게 된다. 수입업자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면허를 받아 반출을 하게 된다.³¹⁾

수입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데 수입업자만이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EU 역내거주자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EU 역내 비거주자도 수입을 할 수 있다. 제3국에서 가공된 후 다시 EU 역내로 수입되는 섬유류 및 피복 생산물로서 수동적 가공생산을 위한 물품에 관하여는 수입허가서 양식이 일정한 형식으로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양식으로 여러 물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물품이 같은 고시품목인 경우와 그 물품이 수입리스트에 의하여 동일한 관할 범위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구입하는 대상국이 같은 나라인 경우이다.

세관이 서류심사 내지 물품검사를 할 때는 수입허가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양식으로 수입허가서를 신청하게 하거나 수입업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신용을 다른 방법으로, 특히 자료의 원격지 전송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을 일정요건 및 조건하에서 허락할 수 있다. 즉 수입의 감시, 허가절차의 간소화, 또는 대외경제법상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물품 또는 물품집단에 대하여 고시에 의하여 각각 별도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³²⁾ 그리고 그 고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제출한 신청은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취급한다. 세관의 서류심사 내지 물품검사가 종료되면 관세가 확정되고 수입업자는 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면허를 받아 반출을 하게 된다.³³⁾

28)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27조(수입통관의 신청) 제2항, 제29조(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진술서) 참조.

29)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28조(수입통관시의 절차), 제28조의 a(수입신고서) 참조.

30)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3장(상품수입) 제2절(법 제26조에 의한 절차 및 보고규정) 제2관(수입허가 필요 수입) 참조.

31)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30조(수입허가서) 참조.

32)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32조(간소화절차) 참조.

33) 대외경제법 제26조, 제46조 3항 참조; 대외경제법 시행령 제31조(수입통관) 참조.

IV. 독일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 과 주변국의 전자무역화 환경

4.1. 독일 관세행정 시스템의 전산화

4.1.1. 독일 세관 웹사이트

독일 연방 정부의 '독일 온라인2005(Bund Online 2005)'을 보면 독일은 세관의 전산화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정보와 기술 포털은 시민들과 경제 단체들이 세관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유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³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세관 정보 센터는 연방 세관 기구의 중앙 콜센터역할을 수행하며, 정보 센터에서는 세관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정보 센터는 웹사이트나 E-Mail³⁵⁾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독일세관에서 몰수하거나 압류한 물품에 관한 경매정보도 세관 웹사이트³⁶⁾를 통해 행해지고 있다.

4.1.2. ATLAS 개발

독일 중앙관세청에서는 관세 지급결제 및 관세행정의 신속화, 통관시스템의 자동화를 기하기 위하여 ATLAS(Automatisiertes Tarif-und Lokales Zoll-Abwicklungs-System)을 개발하여 Subsystem과 함께 실시·운영중이다.³⁷⁾ ATLAS는 세관 활동을 위해 개발된 최초의 전자 서비스이다. ATLAS는 시간에 관계없이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발전된 전자적 세관 허가를 통해서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허가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빠르고 효율적인 관세 절차를 이끌어 낸다. 그러므로 세관의 허가가 나는 동안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피할 수 있다. 2002년 말 현재 90%의 상품의 세관허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목표였다. 2002년 중반에 Atlas는 인터넷을 통해 세관절차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인터넷에 의해 세관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세관사무소에서 내부 데이터의 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던 고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소요되던 시간도 단축시켰다.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에 이를 관할하는 행정부서가 설립되어 ATLAS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ATLA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관에서는 원가회계를 도입하는 등, 신기술을 개발하여 2002년 4월부터 IT지원 관리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ATLAS의 개발 단계를 보면 1단계에서는 2001년 3/4 분기부터 다기능을 보유한 단일처리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2단계에서는 2002년 3/4분기부터 관세조사, 납부독촉, 채무보증, 위기 분석, 관리정보(통계 업무처리)업무를 수행하며, 3단계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전 EU에서 실시할 NCTS(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를 실시·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독일의 32개 세관에서 ATLAS(version 6.0)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료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 12월 현재 ATLAS는 수출보다는 수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1.3. 주요 Subsystem

주요 Subsystem으로는 전자관세율(EZT) Subsystem, 수입처리 절차 Subsystem, 유럽내 반출 Subsystem, 수출 관련 기타 Subsystem 등이 있다.³⁸⁾

34) 독일 세관에 관한 정보는 독일 세관 웹사이트(www.zoll-d.de)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35) info@zoll-infocenter.de

36) www.auktion.zoll-d.de

37) <http://www.mofat.go.kr/ko/trade/eco-convents-view.mof?page>

38) <http://www.mofat.go.kr/ko/trade/eco-convents-view.mof?page>

전자관세율(EZT) Subsystem 시스템은 전자관세신고와 연계하여 통관품목별 구분, 관세조치 대상의 선택 및 수입관세의 정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부구조이다. EU의 TARIC 데이터뱅크 자료인 물품목록, 관세율, 관세부과액 등을 활용하여 수입 매출세, 소비세율 기타사항 즉 금지 또는 제한 등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수입처리 절차 Subsystem은 전자관세율 신고 프로그램(SumAlt)과 다른 프로그램 (StBA, BAW, BLE)과의 시스템 호환성을 유지하는 Subsystem이다. 현재 세관에서 사용중인 ALFA와 DOUANE를 2001년에 ATLAS(version 6.0)로 교체하면서 활용하기 시작한 Subsystem이다.

유럽내 반출 Subsystem은 2000년 5월 10부터 EU내의 독일·스위스·스페인·이탈리·화란의 NCTS 시스템을 갖춘 세관간에 자동지급결제 시스템에 사용하는 Subsystem이다. EU/EFTA의 IT프로젝트인 NCTS 시스템을 독일시스템에 접속한 것이다.

수출 관련 기타 Subsystem은 독일의 2000년 8월 세관업무 단일화계획에 대한 기본 틀이 완료되면서 구상된 Subsystem이다. 창고와 관련된 업무처리, 소송제기 및 배상, 채무면제, 반제품을 활용한 완제품의 수출입 업무를 이행하는 데에 사용되는 Subsystem이다.

4.2. 독일 관련 EU의 전자무역화

EU의 전자무역을 주도한 TEDIS는 EU위원회 결정(Council Decision) 1991년 7월 22일의 91/385/EEC에 의거하여 시작되었다. TEDIS는 1994년 10월 19일에 EU위원회의 전자데이터의 상호교류에 관한 권고안의 채택, 무역에서는 유럽 EDI 협정 모델(European Model EDI Agree-

ment)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전자무역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TEDIS의 목적은 EU역내의 전자 문서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EFTA 국가들이 회원 국가로 참가하여 자동차 디자인 관련된 사항, 화학과 관련된 사항, 전자화와 데이터 프로세서에 관한 사항, 소매 무역과 분배 시스템 사항, 재보험관련 사항, 교통관련 사항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TEDIS는 연구의 결과를 EDIFACT 표준화와 연계하여 COM(90) 361 final을 제안하였다. 즉 TEDIS는 EDI 메시지의 표준화를 통해 유럽에서 EDIFACT 표준사용의 권고와 발전 도모, 권고된 표준에 부응하는 소프트의 발전 도모, 데이터 네트워크 간의 링크 도모 등을 추구하였다. 즉 EDI메시지에 대한 법적 근거, 즉 EDI를 활용한 계약의 유용성과 가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거래상대자에 대한 인증과 메시지의 무결성 및 신뢰성 구축을 통해 다른 지역의 EDI시스템과 분야별 지역별 통합작업의 추진, EDI를 활용하고 있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상호교류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4.2.1. EU의 전자무역화와 물류시스템³⁹⁾

1) EU의 화물연계 시스템 구축노력

EU역내의 화물운송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COM(97(243))에 따른 CEN Mandate를 권고하면서 화물운송을 위한 IT 표준화 보고서를 2000년 11월에 발표하였다. EU의 화물 내부연계(freight inter-modality)시스템은 EU회원국간의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계지점과 지점간의 효율성 제고, 운송네트워크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주

39) <http://www.cenorm.be/sectors/transport/intertrans.htm>

변도시간의 화물 운송, 정보통신시스템 향상, 시장중심 전략과 사회경제 시나리오 등과 같은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그리고 운송업계를 위한 복합업무 시나리오(Multi Industry Scenarios for Transport Group)는 EDIFACT에 관한 상업송장의 업무처리와 운송단계, 내륙항만의 이용계획, 컨테이너 관리 등과 관련한 계획추진을 위하여 EDIFACT메시지의 사용 및 시스템 구성을 위한 XML 및 ebXML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복합운송경로 자동기록(Multimodal End to End Tracking and Tracing)은 CEN/ISSS와 연계하여 EDIFACT를 활용하는 경우 CORBA, 모바일에이전트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자 모색되었다. 그래서 복합운송경로 자동기록은 ISO 6346, 10 378 과 13 044 등과 같은 독특한 인식기준을 주요요소로 하고 있다. 특히 단순복합운송경로 시스템은(Simple Intermodal Tracking System: SITS)은 한 데이터 베이스안에서 복합운송경로 자동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EU복합운송인(european combined transport operators)에게 운송정보제공을 위하여 CTO 인터넷 서버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CESAR를 개발중에 있다. 전자자료교환과 국제운송거점연계시스템(EDI transport와 Union Internationale des Chemins de fer)은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을 연계한 복합운송에서 발생하는 업무량과 현재의 진행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인식하기 위하여 EDIFACT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2) 복합운송시스템

복합운송시스템의 전자화를 위하여 EU위원회는 2001년 12월31에 종료된 PACT의 후속으로

MARCO POLO⁴⁰⁾를 논의하였다. MARCO POLO는 선박운수회사의 운송방법간 또는 화물 선적단위간에 표준화와 조화를 목표로 하는 EU운송정책 백서(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의 핵심인데 2003년 2월 4일에 채택하였다.

MARCO POLO는 Door to Door 운송을 위하여 복합운송수단간의 운송방법의 연계성 및 통합된 운송체인망 구축, 최대의 안전성과 융통성, 최소의 에너지 소비 및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MARCO POLO에서는 육상과 철도 그리고 내수로운송이 연계되어 종국적으로 근해운송과 연결되어야 하는 필연성, 화물선적시의 체계적 보관방법, 운송연계를 위한 표준화된 파렛트 규격, 육상운송을 위한 운송물품의 표준규격, ISO 컨테이너 규격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3) Customs 2002와 전자무역

Customs 2002는 EU회원국들이 세관행정수행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세관행정의 연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EU회원국간 관세법규를 적용하는 데에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6 12월에 EU의회와 EU집행위원회회의의 권유에 따라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Customs 2002의 목적은 EU회원국들 관세법규 적용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류에 의한 무역거래를 감소시키며 관세행정의 능률화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지역만 커버하는 지역통합관세 전산시스템(The Integrated Tariff of the Community: TARIC)을 구축하였다.

TARIC은 EU회원국들간 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무역에 대한 통계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⁴¹⁾EU역내의 모든 거래물품에 대

40) COM(2002)54.

한 관세율 및 특혜관세율 정보, 쿼터 관리 정보, 상업 정책수단, EU의 법 제정과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TARIC을 활용하여 자동세 관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업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 관세업무 간소화 절차와 전산화는 Common Communication Network(CCN/CSI)와 정보 교류가 가능한 NCTS(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4.2.3. EU의 전자무역화와 역내업무연계시스템

EU회원국들간에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자무역을 위한 다양한 역내업무연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BALTPORTS-IT, CASE-NET, DOLPHIN, OCTANE, PKI CHALLENGE 등이다.

BALTPORTS-IT는 Competence Center에서 EC의 AMCAL, DAMAC-HP, SPHERE와 발틱해 연안지역의 항구관리와 업무조정에 대한 IT솔루션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항의 분산시스템인데 BALTPORTS-IT로 작업하는 항구당국, 대행회사, 운송회사, 트럭회사, 하역회사, 보험회사, 철도회사, 창고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CASENET(Computer-Aided solutions to Secur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은 전자화폐 전송 프로토콜인데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한 처리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DOLPHIN은 전화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근해에서 이루어지는 선적사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예약, 스케줄작성, 협상, 중개, 지불, 송장작성 등의 데이터를 적시에 효율

적으로 연계시키고, 사용자인 MTO, 수송회사, 선주, 선적회사, 운송업자, SME들을 연결시켜 역동적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다. OCTANE (Open Contracting Transactions in the New Economy)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관련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OCS를 실행하고 인증하여 전자상거래상의 신뢰할 수 있는 계약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계약 구성과 협상을 지원하는 OCS 소프트웨어, 서명과 인증을 위한 전자공증, 잠재적 계약자의 발굴을 위한 SME 지원BIS의 개발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PKI CHALLENGE은 EU회원국들중 전자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당사자간에 협의점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상호간의 운영에 관한 검사범위를 확대하여, 해당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PKI CHALLENGE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V. 독일의 전자무역 관련 법규 제정과 주요규정

5.1. 독일의 전자무역 관련 법규

5.1.1.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독일은 1995년에 독일 연방정부 연구 기술 및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후, 1995년말에 미디어질서법의 제정을 권고하여 1996년 12월 연방각료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1997년 8월 1일부터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Das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IuKG)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은 정보 및 통신서비

41) Article 5(2) of R 2658/87,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SAD)

스의 기본조건의 규율에 관한 법률이 정식명칭인 항목법률⁴²⁾으로써 인터넷과 관련한 원격서비스법, 원격서비스 데이터 보호법, 전자서명법과 같은 3개의 법률과 기존의 형법, 질서위반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등의 법률에 대한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각주에 입법권한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주 상호간에 미디어서비스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지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새로운 서비스에 있어서의 데이터 보호, 전자거래⁴³⁾ 및 전자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전자서명,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임의적인 자기 통제와 기술적인 자기보호의 법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5.1.2. 원격서비스법

원격서비스법은 전자적 정보 및 통신서비스에 의한 기호, 그림, 또는 음향과 같은 혼합 가능한 데이터의 개인적 이용을 특정하고, 그리고 원격통신을 통한 전달에 기초를 둔 모든 전자적 정보 및 통신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⁴⁴⁾ 원격서비스법(Telemediengesetz: TDG)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제1항으로써 전자거래의 법적 기본조건에 관한 연방정부 법률안 제1조에 기초한다. 2001년 2월 14일에 제출된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에 대한 개정안은 EU의 전자거래지침⁴⁵⁾에 따라 EU회원국간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지

침을 적용하는 독일내의 국내법 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보 및 통신서비스에 관한 현행법이 원격거래에서 주문 및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독일의 원격서비스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원격서비스법의 입법목적(제1조)은 진입자유와 안전성을 통한 원격서비스의 제공과 이행,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서비스 제공자의 표시의무에 대한 기본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제2조)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이용을 위하여 원격서비스를 준비하거나 또는 이용을 위한 진입을 매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원격서비스법의 개정을 위한 전자거래 지침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전자거래법 초안에서는 일반규정(제1절), 진입자유와 정보제공의무(제2절), 책임(제3절), 과태료 규정(제4절)을 두고 있고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제3조 제1호, 제2호), 배포형 서비스와 주문형 서비스(제3조 제3호, 제4호), 상업적 통신(제3조 제5호), 거주지 서비스 제공자(제3조 제6호), 원격서비스제공자의 국내거주(제4조 제1항), 서비스제공자의 국외거주(제4조 제2항), 특정행위의 배제(제4조 제3항), 규제영역의 배제(제4조 제4항), 보호법규의 배제(제4조 제5항), 진입의 자유(제5조) 등과 같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⁴⁶⁾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법안의 내용을 전자거래법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제5조-제12조)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제23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42) 정진명, 「인터넷 관련 독일의 법제 동향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1. 12, p. 7 참조.

43) 우리나라 전자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4) 원격서비스법 제2조 1항

45) Richtlinie 2000/3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 und des Rates v. 8. Juni 2000 über bestimmte rechtliche Aspekte der Dienste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sbesondere des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s, im Binnenmarkt(ABl EG Nr. L 178 v. 17 Juli 2000).

46) 정진명, 전계논문, pp. 7-37 참조.

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제3조), 개인정보의 보호(제22조-제29조), 이용자의 권리(제30조-제32조)에서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5.1.3. 원격서비스데이터 보호법

원격서비스데이터 보호법(TeleDienststedatenschutzgesetz: TDDSG)은 전자거래의 법적 기본조건에 관한 연방정부 법률안 제3조에 기초한 것으로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제2항이다. EU에서 2000년 6월 8일에 유럽의회 지침을 공포함에 따라 독일에서는 원격서비스데이터 보호법을 2000년 6월 27일에 개정하였다. 개정사유로는 EU의 전자거래지침과 상응한 대응을 하고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며 원격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1년 2월 14일에는 개정안⁴⁷⁾이 연방정부안으로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⁴⁸⁾

원격서비스데이터 보호법의 입법목적(제1조)은 개인관련데이터의 수집, 가공 그리고 그 이용의 확대위험을 고려한 데이터 보호이다. 용어의 정의(제2조)에 따르면 원격서비스는 기호, 그림, 또는 음향과 같은 혼합 가능한 개인적 이용을 확정하고 원격통신을 통한 전달에 기초한 모든 전자적 정보 및 통신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관련 데이터 처리에 관한 본인 사전동의 원칙·정보이용 제한의 원칙·전신에 의한 동의 가능성·동의의 강제금지(제3조 제1항-제4항),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사전고지의 원칙·전신에 의한 동의·동의의 수사철회·정보회피 시스템 구축·서비스제공자의 공개여부(제4조 제1항-제4항), 기초정보(제5조), 이용정보의

개념·구분·허가요건·종료정보의 개념·종료정보의 양도·이용요금통지서·종료정보의 보관·서비스제공자의 권리(제6조 제1항-제8항), 정보보호통제(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⁴⁹⁾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법안의 내용을 전자거래법에서 규정한 전자거래의 안전(제13조-제18조) 및 소비자보호(제29조-제32조), 그리고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제5조),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제7조), 개인정보보호(제12조)에서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5.1.4.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Signaturgesetz: SigG)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제3항이다.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제3항은 전자서명의 기본 조건 및 기타의 조문변경에 관한 법률로 개정⁵⁰⁾하였는데 2000년 8월 16일에 전자서명의 기본조건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의결하여 2001년 5월 2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였다.⁵¹⁾ 우리나라에서의 전자서명법은 비대면 상호의견교환을 할 때에 상대방의 신원과 전자서명된 문서를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전자서명법이 1998년 12월에 제정되어 1999년 2월에 공포되었다.

독일 전자서명법의 입법목적(제1조)은 전자서명의 기본조건을 설정하고 전자서명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다른 전자 서명절차도 인정하지는 것이었다. 용어의 정의(제2조)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다른 데이터에 첨부되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와 결합되고 진정성에 기여하는 전자적 방식의 데이터로 규정하고 있다.

47) Fassung des Gesetzes über den Datenschutz bei Teledienst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 Art.3 des Entwurf eines Gesetzes über rechtliche Rahmbedingungen für den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vom 27. Juni 2000.

48) <http://www.iid.de/iukdg/aktuelles/index.html>.

49) 정진명, 전계논문, pp. 40-50 참조.

50) Das Gesetz über den Rahmbedingungen für den elektronisches Signature und Änderungen weiterer Vorschriften vom 21. Mai 2001(BGBl. 1 S. 876).

51) <http://www.iid.de/iukdg/aktuelles/index.html>.

이외에 인증기관(제4조), 고급타임스탬프(제5조), 통지의무(제7조), 입증책임 전환(제11조), 손해전보(제12조), 인증기관의 임의지정(제15조), 관할청의 인증서 발급(제16조), 기술적 안전성(제17조), 고급전자서명을 위한 제품, 검증 및 확인기관의 승인(제18조), 관할청의 감사척도(제19조), 인증기관의 협력의무(제20조), 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을 위한 국제적 승인(제23조), 감사(제24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⁵²⁾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의 입법목적(제1조)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용어의 정의(제2조)에 의하면 전자서명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기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이며, 인증서는 전자서명 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 생성기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전자서명의 효력(제3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제4조), 결격사유(제5조), 인증업무준칙(제6조), 인증역무의 제공(제7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관련사항(제8조-제12조), 과징금의 부과(제2조), 인증서의 발급과 효력 및 폐지(제15조-제18조),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제19조-제26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1.5. 저작권법

저작권법(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vom 22. Juli 1997, BCBl. 1 S. 1273)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제7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1991년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지침을 근거로 1995년 EU의 정보회사

의 저작권과 유사보호권에 관한 제안서(Grünbuch v. 19. Juli 1995. KOM(95) 382.)를 준비하여 1995년 10월 9일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1996년 3월 11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 지침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하여 1997년 7월 22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2001년 6월 22일 EU가 정보회사의 저작권과 유사보호권의 특정 관점의 조화를 위한 EU지침(Richtlinie 2001/29/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 und des Rates vom 22. Mai 2001 zur Harmonisierung bestimmter Aspekte des Urheberrechts und der verwandten Schutzrecht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ABI. EGNr. L 167 v. 22. Juni 2001)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독일은 2002년 12월까지 개정준비를 하여 UT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법은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한다.

독일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보강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저작물 인정(제69조),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이용(제55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제87조) 등⁵³⁾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제1조)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제2조)에서는 저작물, 저작자, 공연, 실연, 실연자, 음반, 음반제작자 등에 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의 성질·행사,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등과 관련한 저작자의 권리(제4조-제53조), 출판권(제54조-제60조), 저작인접권(제61조-제73조),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52) 정진명, 전계논문, pp. 53.-67 참조.

53) 상계논문, pp. 70-74 참조.

(제74조-제77조), 저작권 위탁관리업(제78조-제80조의 2),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제83조-제90조),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91조-제97조의 4)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1.6. 진입통제서비스 보호법

EU가 1998년 11월 20일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진입이 통제된 서비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을 공포함에 따라 독일에서는 2001년 5월 17일 진입통제서비스보호법 초안(Entwurf eines Gesetzes zum Schutz von Zugangskontrolldienste)을 연방정부안으로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⁵⁴⁾

진입통제서비스 보호법의 입법목적(제1조)은 EU의 진입이 통제된 서비스와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을 명료화 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제2조)에 따르면 진입이 통제된 서비스는 유상으로 이행되고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송공연, 원격서비스, 미디어서비스 등이다. 진입을 이외에 영업적 침해의 금지(제3조), 획득한 이익의 반환(제4조), 벌칙(제5조), 정보제공의무(제6조), 즉 일반정보제공의무, 특별정보제공의무, 책임귀속(제7조-제14조)에 관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책임, 타인의 정보에 대한 책임, 타인의 정보의 중간저장에 대한 책임, 타인의 정보의 저장에 대한 책임 등⁵⁵⁾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거래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제32조)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제5조), 개인정보보호(제12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48조)에서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5.1.7. 독일의 전자무역 관련 보완 법률⁵⁶⁾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에서 규정한 법률이외에도 전자무역과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법률로는 형법, 질서위반법, 청소년보호법, 방식규정적응법, 채권법 현대화법,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국가계약 등이 있다.

형법(Das Strafgesetzbuch vom 10. März 1987, BGBl. 1 S. 945)은 정보저장매체를 문서의 개념에 도입(제11조 3항), 음란도서의 배포(제184조), 외설물의 처벌(제184조) 규정을 두어 전자무역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제하고 있다.

질서위반법(Das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 vom 19. Februar 1987, BGBl. 1 S.602)은 정보저장매체를 문서의 개념에 도입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문서 배포에 관한 법률⁵⁷⁾을 근간으로 청소년 유해문서 및 미디어 내용 배포에 관한 법률(Da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로 수정한 것인데 2000년 9월 6일 초안을 작성하여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독일 사법이 현대 법률거래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표시의 전자적 송신 및 계약체결에 대한 장애를 가능한 제거하고 신뢰성있는 법적 지위범위를 통하여 전자적 법률거래에서 법적 안전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법안의 내용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제41조-제44조)에서 찾을 수 있다.

54) <http://www.iid.de/iukdg/aktuelles/index.html>.

55) 정진명, 전제논문, pp. 25-38 참조.

56) 상제논문, pp. 81.-94 참조.

57) Da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vom 12. Juli 1985(BGBl. 1 S. 1502)

채권법현대화법(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vom 11. Oktober 2001(BGBI. 1 S. 3138)은 2000년 6월 8일 EU의 전자거래지침에 의거하여 2001년 10월 11일에 의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 민법에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고 전자계약에서의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규정하여 주문의 교부이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의 개시는 전자적 방법으로 증명하며, 이용자에게 거래계약조건을 거래약관에 의거 저장하거나 재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방식규정적용법(Entwurf eines Gesetzes zur Anpassung der Formvorschriften des Privatrechts und anderer Vorschriften an den modernen Rechtsgeschäftsverkehr vom 6. September 2000)은 EU 전자거래 지침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계약체결과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방식규정적용법으로 작성되어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식규정적용법은 EU 전자거래 지침을 독일민법규정에 수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서면방식(민법 제126조), 임의적 서면방식(민법 제127조) 등이 해당한다.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국제계약은 주정부가 관할하는데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국제계약의 목적은 미디어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다양한 이용가능성에 대한 통일된 기본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국제계약의 적용범위는 미디어서비스에 관한 국가계약은 전자적 전송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또는 유선에 의하여 배포되는 문자, 음성 또는 화상에 있어서 일반 대중을 지향하는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이행에 관한 규정이다.

5.2. 독일의 전자무역과 관련한 EU의 동향

5.2.1. EU회원국의 전자무역 관련 법규 동향

EU에서는 1997년 4월 유럽전자상거래 전략을 수립하여 1997년 7월 세계정보네트워크에 대한 EU각료회의 개최하여 본선언문(Bon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본선언문에서 EU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내국세에 있어서는 과세수입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전자서명지침(Directive on Electronic Signatures, 1999)과 2000년 5월 4일에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2000)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회원국들은 전자거래지침과 전자서명지침에 의거하여 각국에서 독자적인 전자거래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즉 영국에서는 전자거래법(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및 무증서증권규정(1995)을 제정하고 1999년 7월부터는 전자증권 제도인 CRES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1982년 금융법에서 증권무권화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아일랜드는 전자거래법(Electronic Commerce Act 2000)을, 이탈리아는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Act 1998)을 오스트리아는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Act 2000)을 제정한 것 등이다.

5.2.2. EU의 전자무역 관련 권고안 및 지침

1) 전자상거래 권고안

EU는 2000년 6월 8일 전자상거래 권고안(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8, June 2000)은 정보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순기능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 서비스 사업자의 선정, 상업 통신, 전자 계약, 중간 단계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제품 코드, 분쟁의 해결, 법적 조치, 그리고 협력과 관련된 사항,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국의 조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멀티미디어 지침

멀티미디어 지침(Richtlinie 2001/29/29/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 22. Mai. 2001 zur Harmonisierung bestimmter Aspekte des Urheberrechts und der verwandten Schutzrecht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ABl. EG Nr L 167 v. 22. Juni 2001)은 WIPO의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과 공연과 음반매체에 관한 WIPO 조약(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s Treaty: WPPT)을 인정한 것이다.

멀티미디어 지침의 목적(제1조)은 상이한 국내저작권 규정을 통하여 EU 역내시장의 통일된 법적 저작권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이용권의 보호(제2조 내지 4조)로서 복제권(제2조), 공중에 대한 재현권(제3조), 유포권(제4조), 복제권의 예외(제5조), 복제권의 예외와 제한(제6조) 등⁵⁸⁾을 규정하고 있다.

3) 개인정보상의 전자통신 관련사항 채택 권고안

개인정보상의 전자통신 관련사항 채택 권고안(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2, July 2002)은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회원 국가들의 법규들과 조화를 이루고 특히, 전자통신 영역에 있어個人資料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조화를 이루며 또한, EU역내에서 그러한 자료 및 전자통신설비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인정보상의 전자통신 관련 사항채택 권고안은 EU역내 공공 통신네트워크의 공공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個人資料의 운용에 적용되며, 보안의 경우 공공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보안을 위해, 유효한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의 기밀성에 대해서 EU회원국들은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 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의한 통신과 관련한 교환자료의 기밀성의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교환자료에 대해서는 공공 통신네트워크 또는 공공 전자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처리되고 저장되는 가입자와 이용자의 교환자료는 통신의 전송목적에 필요하지 않게 될 때에는 삭제되거나,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고객 금융서비스의 원격 마케팅에 관한 규정

고객 금융서비스의 원격 마케팅에 관한 규정(Directive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3, September 2002)의 목적은 금융서비스의 원거리 소비자 마케팅과 관련하여, EU회원국들의 법률, 규정, 행정 조항에 근접하는 것이다.

동일한 본질의 연속적인 공정 또는 일련의 독립적 공정이 필요한 최초의 서비스 합의를 포함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계약의 경우, 고객 금융서비스의 원격 마케팅에 관한 규정은 최초 합의에만 적용된다. 고객 금융서비스의 원격 마케팅에 관한 규정에서는 원격계약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원격계약 또는 원격제안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공급자의 정보를 제공

58) 정진명, 전계논문, pp. 74-80 참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격계약에 관한 사항인 계약기간과 조건, 그리고 사전 정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요구되지 않은 통신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5.3. 독일의 전자무역과 온라인 분쟁해결제

온라인 분쟁해결제(ON-LINE ADR)는 온라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온라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온라인 ADR 제공자에게 ADR을 신청하여 온라인 ADR 제공자가 피신청인에게 절차 참여를 권고하고 피신청인이 승낙하는 경우에 논의가 진행된다. 논의를 할 때에는 소프트 웨어를 활용하여 당사자간에 스스로 조정을 진행하거나, 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온라인을 이용하여 해결하게 된다.⁵⁹⁾

국제적으로 주요한 온라인 ADR 제공기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분쟁중재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온라인중재 프로그램(Better Business Bureau On-Line), 온라인 옴부즈만 센터(On-Line Ombudsman Office), 미국정보법 및 정책센터, 미국중재협회, 가상공간법연구소 등이 참여한 가상재판관제도(Virtual Magistrate) 인터넷주소관리기구 등이 있다. 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온라인 도메인의 분쟁해결을 위한 가구인데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을 중심으로 인터넷도메인 네임과 아이피 주소에 대한 분쟁정책을 수립하며 WIPO의 통일된 도메인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1999: UDRP)을 권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kr 도메인 분쟁을 해결한다.

59) <http://consumerconfidence.gbde.org/adr.doc>

VI. 결론

독일의 무역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역거래에 대외무역법을 근간으로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독일은 대외경제법을 근간으로 무역에 적용하고 있다. 수출입관리에 따르는 세관절차에 있어서도 독일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각 주에 수출세관이 존재하고 주요 항구에 반출세관이 존재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수출세관을 거치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는 바로 반출세관을 경유하여 수출하게 된다.

독일에서 수출입을 지원하거나 수출입을 주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포워드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관세사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워드가 관세업무를 포함하여 무역전반에 걸친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업무에서는 포워드가 나서서 대행하지만 독일의 경우와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다.

독일의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EDI시스템 보다는 전반적으로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세행정에서는 ATLAS를 개발하여 주요 Subsystem인 전자관세(ETZ) Subsystem, 수입처리 절차 Subsystem, 유럽내 반출 Subsystem, 수출 관련 기타 Subsystem 등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역내의 전자무역 환경을 살펴 보면 물류활동과 관련되어 화물의 내부연동 시스템이 COM(97/243)과 CEN/ISSS와 연계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EDIFACT에 기초한 CORBA, SITS(Simple Intermodal Tracking System) 등이 구축되어 있다. 정보 관리 차원에서는 CESAR, 운송실무에서는 MARCO POLO, 관세행정에서는 Customs 2002에 의한 TARIC,

발틱해 연안 지역의 항구관리와 조정에 대한 BALTPORTS-IT, 전자화폐 전송 프로토콜 CASENET, 전화-컴퓨터연결인 DOLPHINS, 전자상거래상의 계약환경 조성을 위한 OCTANE, 상호 운영성 검사를 위한 PKI CHALLENGE 등이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전자무역 관련 주요법제로는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원격서비스법, 원격서비스데이터 보호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진입통제서비스 보호법 등이 있다. 그리고 전자무역 관련 법률을 위한 보완법률에는 형법, 질서위반법, 청소년 보호법, 방식규정적용법, 채권법 현대화법,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국가계약 등이 있다. 독일의 전자무역과 관련한 EU의 전자무역거래 보완제도에는 전자상거래 권고안, 멀티미디어 지침, 프라이버시와 전자통신 관련 채택 권고안, 고객 금융 서비스의 원격 마케팅에 관한 규정, 온라인 분쟁해결제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은 기존의 무역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전자무역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독일의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이 EU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전자무역시스템이 EU와 연계가 되면 전자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이 EU의 지침을 근거로 독일의 대외경제법과 대외경제법 시행령에 따라 무역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전자무역과 관련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독일과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의 무역제도 및 전자무역 시스템 여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전자무역 관련 법제에 관한 더욱 많은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훈, 전자거래 관련 법제정비방안, 「전자거래와 관련한 약관규제법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6.
- 노태약, 전자거래 관련 법제정비방안, 「전자거래 법률용어의 개념 정립에 관한 비교법적인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01. 6.
- 문준조,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2000. 12.
- 오병철, 전자거래 관련 법제정비방안, 「디지털 정보거래의 의의 및 규율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6.
- 정완용, 인터넷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1. 11
- 정진명, 인터넷 관련 독일의 법제 동향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1. 1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비즈니스 정보 독일, 200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주요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제6편 EU, 199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주요시장 진출전략 EU편, 200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 에코라벨 가이드, 1999.
- 외교통상부, 독일개황, 2002. 6.
- 우리나라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시행령.
-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 우리나라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 우리나라 전자서명법 및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 AuBenwirtschaftsgesetz(AWG).
- AuBenwirtschaftsverordnung(AWV).

Das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

Da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

Das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Das Strafgesetzbuch

Entwurf eines Gesetzes zum Schutz von Zuganskontrolldienste.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passung der Formvorschriften des Privatrechts und anderer.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Schulrechts.

Signaturgesetz(SigG)

Teledienstedatenschutzgesetz(TDDSG)

Teledienstegesetz(TDG)

Vorschriften an den modernnen Rechtsgeschäftsverkehr.

<http://www.budongsan.com/over/germany5.htm>

<http://www.bmu.de>

<http://www.business-in-germany.de>

<http://www.consumerconfidence.gbde.org/adr.doc>

<http://www.din.de>

<http://www.europe.co.kr/GERMANY/GERMANY.htm>

<http://www.iid.de/iukdg/aktuelles/index.html>.

<http://www.kotra.or.kr/main/info/daily/eco-contl.php3?mc>

<http://www.kotra.or.kr/ktc/muc/country/CountryDetail.php3>

<http://www.mofat.go.kr/ko/trade/eco-convents-view.mof?page>

A study on the system and the law related with a electronic trade in german

O-Kwon*

Abstract

For the internet is spreading out, a trade method and a trade process are changing. Especially, with the development of an internet, a international trade can be made via internet and other trade related with businesses can be achieved electronically. The electronic trade is expected to dominate the global trade. Therefore, a trader needs to study this new method of trade transaction with German.

This paper focuses on the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in German. They participate in the foreign trade which is based on The Außenwirtschaftsgesetz(AWG) and Außenwirtschaftsverordnung(AWV). Customs are managed by the processing of two methods, The one is a export custom processing, the other is a outward custom processing.

This paper also focuses on the law for a electronic trade in German. There are a variety of Law related with a electronic trade in German. For example, there are Das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Teledienstegesetz, Entwurf eines Gesetzes zum Schutz von Zugangskontrolldiensten, Teledienstedatenschutzgesetz, Signaturgesetz, Das Strafgesetzbuch, Das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 Da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passung der Formvorschriften des Privatrechts und anderer Vorschriften an den modernen Rechtsgeschäftsverkehr,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passung der Formvorschriften des Privatrechts und anderer Vorschriften an den modernen Rechtsgeschäftsverkehr,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tc.

* Professor, Dept. of Trade in Social Science, HanSung University.